

생 활 안 정 과

연 번	세 부 사 업 명	
1	희망을 함께 만드는 동행, 기초생활보장	
	1-1	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 조사·관리
	1-2	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운영
2	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급여	
	2-1	다함께 건강한 의료급여 수급 지원
	2-2	재가 의료급여 사업
	2-3	의료급여 만성질환 과소이용자 발굴 및 관리 신규
3	안정된 내일을 보장하는 자활·자립사업	
	3-1	자활근로사업 운영
	3-2	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
	3-3	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
	3-4	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사업
4	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신규	
5	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	

▷(근 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▷필요성

- 복지급여조사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
-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

▷(추진방향)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 구축

1-1.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 조사·관리

○기 간 : 2026. 1 ~ 12월

○사 업 비 : 비예산

○대 상 : 구미시민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

○내 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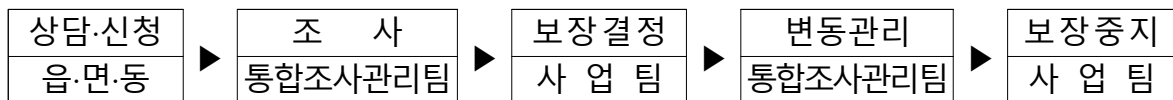
- 기초생계급여 등 16종*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보장 조사

<복지급여 16종>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타법의료급여,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자활, 자산형성, 주거급여,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, 교육급여, 초중고교육비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, 기초연금, 장애수당, 장애연금, 차상위장애인

- 복지대상자 확인조사(상·하반기, 매월) 및 변동조사
- 조사 부적합자 대상 범망 외 서비스 연계 등으로 위기 상황 대처
- 처리기간 : 30일, 1회 연장가능(60일 이내)

○업무처리절차



※ 추진실적 (2025. 8월 기준)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생계급여	의료급여	주거급여	교육급여	차상위	한부모	연금 등
계	13,692	5,404	2,219	1,620	903	1,161	454	3,671
신규조사	7,060	1,281	909	1,266	222	1,066	251	3,322
변동관리	6,632	4,123	1,310	354	681	95	203	349

1-2.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운영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68,972백만원(국 62,075 도 4,828 시 2,069)
- 대 상 : 8,513가구('25. 8월 기준) ※ '24. 8월(7,667가구) 대비 11% 증가
- 내 용
 - 기초생계·의료·교육급여 및 해산·장제급여 지원
 - 기준 중위소득 6.51% 인상(4인가구 기준)
 - 기초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74.4%, 1인 생계급여 7.2% 인상
 - 1인 생계급여수급자 생일축하 문자 전송(5,700여명)
- 급여별 지원 현황

구 분	선정기준	지원대상	지원내용
생계급여	중위소득 32% 이하	8,513가구	•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차등 지원
의료급여	중위소득 40% 이하	7,346가구	•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
교육급여	중위소득 50% 이하	1,685가구	• 교육활동지원비·수업료 등 지원
해산급여	기초생활수급자	-	• 출산 시 1인당 700천원 지급
장제급여			• 사망 시 1인당 800천원 지급

※ 추진실적 (2025. 8월 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 원 실 적				비 고
	연 누계		월 평균		
	가구수	금 액	가구수	금 액	
2022	71,738	35,793,082	5,978	2,982,757	증 10.1%
2023	78,066	41,135,926	6,506	3,427,994	증 7.4%
2024	89,070	53,768,933	7,423	4,480,744	증 9.8%
2025	63,839	41,684,855	7,979	5,210,606	(1~8월)

- 기대효과
 -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 수준 향상
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통합조사관리1/2/사회보장팀 (☎2771/2781/2751)

2

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급여

▷(근 거) 「의료급여법」

▷필요성

-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 지원
-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복약 실천이 미흡하여 질병 악화 가능성 존재

▷추진방향

- 조기 발굴 및 관리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- 적정 의료 이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

2-1. 다함께 건강한 의료급여 지원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5,247백만원(국 914, 도 229, 시 4,104)
- 대 상 : 8,177가구 / 9,946명('25. 8월 기준 ※ '24. 8월(7,690가구) 대비 63% 증가)
 - 1종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질환자, 중증질환자 등(6,428가구/7,282명)
 - 2종 :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(1,749가구/2,664명)
- 지원내용
 - 본인부담금 지원

구 분		1차(의원)	2차(일반종합병원)	3차(상급종합병원)	약 국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- 현금급여 지원

('25. 8월 기준, 단위 : 건 / 천원)

구 분	내 용	지원실적
요양비	전문의에게 해당 질병 관련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 요양비 지원	1,965/ 365,166
장애인보조기기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	134/ 119,010
건강생활유지비	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매달 6,000원의 외래 진료비 지원	3,855/ 124,353
본인부담 보상금·상한제	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 환급	1,397/ 31,432
입양아동 정산진료비	「입양특례법」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본인부담금 지원(1종에 한함)	177/ 10,876

2-2. 재가 의료급여 사업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57백만원(국 45.9, 도 11.4)
- 대 상 : 19명(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5명)
- 내 용 : 1인당 월 716,500원 이내
 - 의료지원 : 의료·영양 상담 및 외래 이용 모니터링
 - 식사지원 :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 1~3식 제공
 - 이동지원 : 병원 진료 교통차량 연계 및 교통비 지원
 - 선택급여 : 복지용품 및 필수 가전 등 지원

※ 추진실적 (2025. 8월 기준)

(단위 : 천원)

대상자 인원	계	의료지원	식사지원	이동지원	선택급여
19명	34,531	7,529	23,705	2,038	1,259

2-3. 의료급여 만성질환 과소이용자 발굴 및 관리 신규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비예산
- 대 상 : 500명 정도
 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중 과소이용자
- 내 용
 -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중 과소이용자에 대해 복약 안내
 - 복약 지속 불이행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·읍면동 연계 관리 등록
- 기대효과
 - 고혈압·당뇨병 복약 순응도 향상 및 질병 악화 예방
 - 건강상담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
 -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도모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사회보장팀 (☎2751)

3

안정된 내일을 보장하는 자활·자립사업

▷(근 거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」, 「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▷필요성

-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안착 지원
- 주거안정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학습의욕 고취

▷추진방향

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일자리 제공 및 계층에 적합한 자산형성지원

3-1. 자활근로사업 운영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5,601백만원(국 5,041, 도 112, 시 448)
- 대 상 :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
- 내 용 :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하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- 자활사업단 현황

유 형	개소	사업단명	인원	내 용
계	19		321	
시장 진입형	8	. 카페(송정, 열린나래, 에코강동, 성리학, 이팝)	21	음료 판매
		. 달인의찜닭(시청점)	7	프랜차이즈 식당
		. 깨끗한세탁	7	세탁임가공
사회 서비스형	10	. 새하얀운동화	3	신발세탁
		. 봉한원평도량송정강동구평진평일터	233	전선, 부품 조립
		. 달인의찜닭(옥계점)	2	프랜차이즈 식당
		. 오늘의찬스	11	밀반찬 프랜차이즈
초기상담	1	. Gate-Way	37	자활교육, 계획수립

※ 추진실적

-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

연 도	예산(천원)	사업단(개소)	참여자(명)	비 고
2024	4,967,095	20	300	
2025	5,305,435	19	320	

- 지자체 자활근로사업

연 도	예산(천원)	참여자(명)	유 형	운영주체	비고
2024	239,040	15	복지도우미	구미시	
2025	296,000	12	근로유지형		

3-2.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1,964백만원(국 1,768, 도 59, 시 137)
- 대 상 : 근로활동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약 1,100가구
- 내 용 :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·교육적 지원으로 근로 의욕 고취
(저축 시 정부지원금 적립)

구 분	희망저축계좌		청년내일저축계좌	
	기초수급	차상위	차상위이하	차상위초과
지원대상	근로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	근로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	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(만15~39세)	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~34세)
정부지원금 (월)	30만원	10만원~30만원 (연차별 차등매칭)	30만원	10만원
가입세대 ('25. 8월기준)	44	78	574	338

※ 3년 평균 적립액 : 기초수급자 14,400천원 / 차상위 7,200천원 (본인저축+정부지원)

3-3.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390백만원(시비)
- 대 상 :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 13가구
- 내 용
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임주 보증금 융자 지원(세대당 3천만원) * 최초 계약 3년, 2년 1회 연장가능

※ 추진실적(2020~2025) : 41가구 / 1,078,697천원

- 만료대상 융자금 징수내역 ('25. 8월 기준, 단위 : 가구 / 천원)

계		생활안정자금		주거안정자금	
징수가구	징수액	징수가구	징수액	징수가구	징수액
26	109,865	24	104,565	2	5,300

※ 체납금액 : 생활안정자금 181,335천원, 주거안정자금 72,700천원

- 향후계획
 - 신규 체납건 납부 독려
 -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부 및 재산 압류 등 적극 조치

3-4.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원사업

- 기 간 : 2026. 10 ~ 11월
- 사 업 비 : 30백만원(시비)
- 내 용 : 저소득주민(수급자 및 차상위) 자녀 중 학업성적이
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

※ 지자체 또는 타기관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

- 고등학생 : 1인당 500천원 (40명)
- 대 학 생 : 1인당 1,000천원 (10명)

※ 추진실적 (2022 ~ 2024)

(단위 : 명 / 천원)

연 도	인 원	지원금액	비 고
2022	24	12,000	
2023	26	13,000	
2024	35	17,500	

* 2025년 : 10월 중 선정 및 지원 예정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(☎2761)

1.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의 민간 취·창업률 저조(연 6% 미만)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탈수급 지원 정책의 필요성 대두
- 경제적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및 민간 취·창업 유도

□ 주요내용

- 사업비 : 36백만원(국 32, 도 1, 시 3)
- 내용
 -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조건부 수급자^① 중 민간시장 취·창업 사유^②로 탈수급(생계급여) 유지한 조건부 수급자^③
→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 선정 가능
 - 탈수급 및 민간 취업 상태 6개월 유지 시 50만원
 - 추가 6개월 유지 시 100만원 지급 (1인당 1회, 최대 150만원 지급)
- 지원가능 대상자 : 387명 (조건부 수급자 332, 탈수급 유지자 51, 민간 취·창업자 4)

2. 추진계획

- 사업홍보 및 안내(자활근로자 및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) : '26. 1~2월
- 신청 및 조사 : '26. 8월
 -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[복지로(www.bokjiro.go.kr)] 신청
-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: '26. 11월
 - 취업성공수당,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등 타사업과 중복 불가
 - 대상자 계좌 지급
- 사후관리(상담 및 서비스 연계, 교육지원 등) : '26. 12월

3. 기대효과

-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으로 취창업 의지 고취 및 장기근속 자활 자립 유도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(☎2761)

1. 사업개요

□ 큰 거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
- 「구미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」(2023. 10. 제정, 2024. 01. 시행)

□ 필요성

-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가족관계 해체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
- 무연고 주민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 및 고인의 존엄성 제고

□ 주요내용

- 기 간 : 2026. 1 ~ 12월
- 사 업 비 : 30백만원(시비)
- 대 상 : 관내에서 사망한 내·외국인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
- 내 용 : 장례용품, 시설 사용료, 추모의식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(단위 : 천원)

대 상	지 원 사 항				비 고
	합 계	시신처리	장례지원	안치료	
무연고사망자	1,500	1,000	200	300	

※ 추진실적

- 2024년 : 18구, 21,200천원 / 2025년(1~8월) : 11구 / 16,500천원

2. 처리절차

사망자 발생	연고자 확인	추모/시신처리	화장/봉안	사망신고
• 병사→병원 • 변사→경찰	• 연고자 유무 및 시신 인수 의사 확인 • 무연고 사망자 기준 충족시 공영장례 진행	• 추모 공간 확보 및 운영 • 시신 처리	• 화장 • 납골당 봉안(5년)	• 직권처리
병원/경찰	생활안정과	장례업체	구미도시공사 구미시공설송조당	민원봉사과

※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(영사관) 협조를 통해 연고자 확인

담당부서 :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(☎2761)